

사회과학대학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에서 대학내규로 정하도록 한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인의예지를 교시로 삼아 민주적 시민으로서 높은 도덕적 자질과 학문적 교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 배출하고, 선도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국가 및 인류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본교의 교육 이념을 사회과학 제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장 편 제

제 1 절 교육조직

제3조(학사조직 및 학위과정) ①「학칙」 제5조에 의하여 본 대학에 설치된 학사조직 및 각 학사조직에 설치된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

- 가. 행정학과 : 학사과정
- 나. 정치외교학과 : 학사과정
-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학사과정
- 라. 사회학과 : 학사과정
- 마. 사회복지학과 : 학사과정
- 바. 심리학과 : 학사과정
- 사. 글로벌리더학부 : 학사과정
- 아. 소비자학과 : 학사과정
- 자. 아동·청소년학과 : 학사과정

2. 일반대학원

- 가. 정치외교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다. 사회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라. 사회복지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마. 심리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바. 소비자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사. 아동·청소년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아. 인재개발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3. 특수대학원

- 가. 국가전략대학원 : 석사과정
- 나.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 석사과정

다.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과정

4. 전문대학원

가. 국정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제4조(학장 등) ①「학칙」 제7조에 의하여 본 대학을 대표하고, 교육조직, 행정조직 및 부설연구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학장을 둔다.

②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에는 각각 원장을 둔다.

③학장을 보좌하여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학과장(주임교수)을 두며, 글로벌리더학부에는 학부장을 둔다.

④글로벌리더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리더학부장에게 위임한다.

제 2 절 위원회

제5조(대학운영위원회) ①「학칙」 제77조에 의하여 본 대학의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과학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학장 및 각 학사과정의 학과(부)장과 행정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학인사평가위원회) ①「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본 대학의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과학대학인사평가위원회(이하 “인사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장과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4 내지 10명의 본 대학 소속 교원 중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인사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원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 대상자에 대한 종합평정 심사

⑤인사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강사선정위원회) <삭 제>

제 3 절 부설연구기관

제8조(부설연구기관) ①「학칙」 제12조에 의하여 본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사회과학연구원을 둔다.

②사회과학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소(센터)를 둔다.

1. 응용심리연구소
2.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3.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4. 사회복지연구소
5. 도시발전연구소

6. 국정평가연구소
7.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8. 생활과학연구소
9. 거버넌스연구센터
10.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11. 인권과개발센터
12. 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
13.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14.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15. 창의융합인재연구소

③ 제1항의 부설연구기관은 학장이 관할하며, 각 연구소(센터)는 소장(센터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제 3 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제 1 절 국내외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9조(학기단위의 타 대학 파견 또는 유학) <삭 제>

제10조(학점 및 성적의 환산) <삭 제>

제 2 절 출석

제11조(출석인정 사유)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석·시험·성적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 4 장 학사과정

제 1 절 졸업평가

제12조(졸업평가) ① 「학칙」 제40조에 의거한 본 대학의 학과별 졸업평가 실시여부 및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② 졸업평가는 학과별 지정된 규격·양식 등에 맞추어 동계 졸업 기준 매년 11월 말(하계 졸업자는 5월 말)까지 졸업평가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③ 학과별 졸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마다 학과장이 정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년도 개시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지도) <삭 제>

제 2 절 장학

제14조(장학금 정의) 장학금이라 함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여 대학운영위원회에 선발이 위임된 성적우수장학금과 교외 장학재단에서 학교에 추천대상을 요청하여 학장에게 선발이 위임된 장학금을 말한다.

제15조(선발기준) ①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해당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별도의 선발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이를 우선순위에 둔다.

② 동점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의 선발기준을 상회하는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중 이수학점이 많은 자
3. 직전학기 제1전공성적 이수학점이 많은 자 중 제1전공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중 이수학점이 많은 자

제16조(성적우수장학금) ①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과별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에게 학장이 지급한다.

② 학과장은 장학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학년별 인원 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추천한다.

제17조(교외 장학재단장학금) ① 본 대학의 교외 장학재단장학금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학기 재학생 중 학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교외 장학재단 지정 기준 적용
2. 학과별 전재순에 따라 배정(기수혜 학과는 차순위로 정함)
3. 학과별 전재순은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소비자학과, 아동·청소년학과 순(글로벌리더학부 제외)
4. 장학 선발기준 및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우수한 학생 선발
5. 기타 학장이 교육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거나, 학교 및 대학의 명예를 드높여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5 장 일반대학원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18조(학점의이수) ① 2016학번 이후 신·편입학한 자 중 학위논문 작성을 희망하는 자는 수료 전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과목을 학과에서 정한 학점과 이수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과정 수료가 제한된다.

② 2020학번이후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학위논문심사신청이 제한된다.

제 2 절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제19조(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설치된 학과의 전공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전공운영) 전공명칭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학장에게 신청하며,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 3 절 선수학점

제21조(선수학점) ① 입학이전 신(편)입학자가 이수한 교육과정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과장은 선수학점을 부과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수학점은 선수학점 및 인정학점 부과·관리 지침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단,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별 최대 선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석사, 석박사통합 및 박사 공통)

1. 정치외교학과: 최대 12학점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석박사통합 최대 12학점, 박사 최대 3학점
3. 사회학과: 최대 12학점
4. 사회복지학과: 최대 12학점
5. 심리학과: 최대 24학점
6. 소비자학과: 석사 최대 12학점, 박사 최대 24학점
7. 아동·청소년학과: 석사 최대 12학점, 박사 최대 24학점
8. 인재개발학과: 최대 24학점
9. 소셜아이노베이션융합전공: 최대 12학점

③학과장은 최대 선수학점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별로 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을 선수학점으로 부과한다.

④학과장은 학생이 정규과목 또는 선수과목 이수를 통해 선수학점 부과의 목적을 조기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부과한 선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⑤학과장은 선수학점 부과, 조정 내역을 행정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논문제출자격시험

제22조(외국어과목) ①외국어과목은 영어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한문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과목 1과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응시케 할 수 있다.

②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외국어과목은 해당 언어문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평가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3조(외국어과목의 면제) ①학장이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영어과목에 한하여 외국어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장이 면제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토플(TOEFL) : 550점(PBT), 215점(CBT), 80점(IBT) 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 700점 이상 취득자
3. 텁스(TEPS) : 309점 이상 취득자
4. 지텔프(G-TELP) :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5. 영어권국가에서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대상국가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②석사학위과정 재학생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과목을 면제한다.

제24조(전공과목) ①전공과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3. 석박사통합과정 : 3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②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학과별 전공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④전공과목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⑤전공과목의 시험방식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시험방식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전공과목의 면제) <삭 제>

제25조(출제위원) <삭 제>

제26조(시험 진행) <삭 제>

제 5 절 논문지도

제27조(논문지도교수)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지도교수 1인 당 논문지도 학생 수를 석사학위과정은 5명,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료생 제외)

제27조의2(논문작성 실험실습비) <삭 제>

제28조(지도교수 선정 시기) <삭 제>

제 6 절 논문심사

제29조(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휴학생 포함)는 예비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3. 석박사통합과정 : 3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② 예비심사는 1회 실시하되 소속학과 전공별 전임교원 및 대학원재학생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형식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절차) 학위청구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중 1종으로 논문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을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논문요지를 한글로 써야 한다.

제31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공개발표 및 심사 1회와 최종심사 1회로 총 2회 실시한다.

② 논문심사의 1차 심사인 공개발표에는 전임교원 및 대학원 재학생이 참석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논문내용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사전 요청으로 공개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공개발표 후 심사대상자와 심사위원들 간의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위한 토론에는 심사대상자를 제외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 후 그 결과보고서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기간경과생의 예비심사 및 심사 신청자격) <삭 제>

제32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 제67조제1항에 의거,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제 7 절 연구중심 학위이수 제도

제33조(학위논문제작) <삭 제>

제33조의2(대상) 대학원 학술학위과정 재학생 중 수료학점의 50% 미만, 수업연한의 1/2 이수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제33조의3(신청 및 허용) 대학원 학과별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① [신청] 연구 주제 및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은 학과장 승인) 하에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심사 및 허용] 지도교수 및 관련 분야 교원의 의견을 들어 주제 및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성적, 어학능력, 연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용한다.

1.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이수 허용 시 연구학점 취득 범위(수료학점의 최대 70%까지 허용)를 수료학점 내에서 조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공동지도교수(Co-advisor) 구성] 지도교수를 책임지도교수로 하여 교내 전임교원 중 책임자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권장) 한다.

1.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전임교원 참여를 권장한다.
2. 연구 내용의 특성상 공동지도교수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지도교수 단독 지도가 가능하다.

제33조의4(학위과정 이수) ①[coursework]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조정 내역에 따라서 수강한다.

②[연구기관 소속 원칙] 선정 직후부터 연구수행에 가장 적합한 교내 연구실(lab) 등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수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학점 취득] 연구계획에 따른 독자/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책임지도교수를 비롯한 Co-advisor는 학기별로 지도를 시행한다.

1. 정규등록기간에 연구중심 학위이수생 전용의 연구학점 교과목인 ‘심층개별연구’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2. ‘심층개별연구’ 교과목은 각 학과단위 혹은 대학 단위의 대학원 공통과목으로 개설하며,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을 허용한다.(교과목 개설 총량 혹은 수업개설 총량 등 제한 없음)
3. ‘심층개별연구’ 교과목은 연구중심 학위이수생만 수강 가능하며 개별연구과목으로서 담당 교강사가 지정되지 않는다.
4. 학점은 학생의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매 학기말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한다.

④[공개/영어 Presentation] 연구의 중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공개 /영어 Presentation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1. 최소 수료연한 1개 학기 전에 실시한다.(석·박통합과정은 2개 학기 전)
2. 합격자에 한해 과정이수 지속을 허용하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교과중심 학위이수로 환원된다.(기 취득 연구학점은 인정하되, 신규 연구학점 취득은 불가)

⑤[학술지 논문 게재] 연구 결과물을 국제학술지 등 일정 기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로 게재한 경우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⑥[중도포기] 중도포기자의 경우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기존에 취득한 연구학점은 인정)에 학위수여 가능하다.

1. 단, 수료연한 1개 학기 전(석박사통합과정은 2개 학기 전)까지만 중도포기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중도포기가 불가능하다.(중도포기 시 기존 지원은 모두 중단되며, 연구학점 취득 역시 불가)

제33조의5(학위 수여) 교과중심 학위이수 요건인 ①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②학위논문 예비 심사/본심사 합격과 함께, ③연구학점 취득, ④공개/영어 Presentation, ⑤일정한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게재 등 자격 충족 시 학위를 수여한다.

제33조의6(연구중심 학위이수 제도 시행 학과) 연구중심 학위이수 제도 시행 학과 및 이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 6 장 특수대학원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34조(학점의이수) ①2016학번 이후 신·편입학한 자 중 학위논문 작성을 희망하는 자는 4학기 이내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학과에서 정한 학점과 이수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과정 수료가 제한된다.
②2020학번이후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하고, 미이수시 학위논문심사신청이 제한된다.

제 2 절 선수학점 및 특별학점 취득

제35조(선수학점) ①입학이전 학생의 교육과정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수대학원 장은 입학자에게 선수학점을 부과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선수학점은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격시험과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선수학점은 1기 종료 전에 부과하고 2기 종료 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제 2 절 논문제출자격시험

제36조(외국어과목) ①외국어과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과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한다.
2. 외국어과목은 한 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3. 외국어과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응시원서를 행정실에 제출(인터넷 응시신청)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각 대학원 외국어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전략대학원 : 영어
2.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 영어
3. 사회복지대학원 : 영어
③외국인은 모국어를 외국어과목으로 응시할 수 없다.
④외국어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을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영어과목에 한하여 학장이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외국어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장이 면제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토플(TOEFL) : 550점(PBT), 215점(CBT), 80점(IBT)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 700점 이상 취득자
3. 텁스(TEPS) : 309점 이상 취득자
4. 지텔프(G-TELP) :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5. 영어권국가에서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대상국가는 해당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6.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과목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7. OPIc : IM 이상 취득자(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적용)
8. 토익스피킹 : Lv6 이상 취득자(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적용)

⑥장애학생의 외국어과목 면제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 공무원 선발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전공과목) ①전공과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공과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전공과목을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2. 전공과목은 한 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학사력을 참고하여 학장이 정한다.

②전공시험과목은 전공시험과목 리스트 중에서 3과목 이상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다만, 국가 전략대학원의 경우 이를 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각 특수대학원별 전공과목은 각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④전공과목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을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A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 3 절 논문지도 및 심사

제38조(논문지도교수) ①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4학기 중 또는 5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 선정원(소정서식)을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논문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로부터 계속하여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논문지도) ①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지도교수가 선정되면 논문심사 일정에 맞추어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논문지도 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논문지도교수가 판정하여 보고한 자는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 수를 지도교수 1인당 10명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논문작성을 위하여 실험실습이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절차) 특수대학원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절차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1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①특수대학원 재학생 또는 수료생이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 제67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추가이수 교과목은 소속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며,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은 4학기말 소정기간에 논문제출면제신청서(소정서식)를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대학원 보육경영학과는 별도의 논문제출면제신청서 제출없이 당연 면제한다.

제42조(특수대학원 논문심사) ①논문의 심사는 매학기 말(6월중, 12월중)에 실시하며 논문내용 심사와 구두시험으로 한다.

②논문 및 구두시험은 학장이 지정하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③학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하며,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④논문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논문에 대한 수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날(심사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해당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수정완료 확인을 받은 다음 인쇄하여

야 한다.

제43조(학위논문제작) <삭 제>

제 4 절 특수대학원 전공

제44조(특수대학원 학과 및 전공) 국가전략대학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학과 및 전공명은 별표 6과 같다.

제44조의2(국가전략대학원 전공배정) ①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전공배정을 위해 해당교육과정 기준으로 4학기까지 희망 전공영역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당학생은 최종학기 초에 전공배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이를 협의한다.

제 7 장 국정전문대학원

제45조(국정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본교 「학칙」 제73조 및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 제77조에 의하여 국정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정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6조(위임) ① 대학내규에 정하는 사항 중 국정전문대학원에 관한 내용은 학장이 「국정전문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

② 「국정전문대학원 학사운영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정전문대학원장은 국정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내규 개정(안)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개 정

제47조(개정) ① 학장은 「학칙」의 범위 안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내규를 개정 할 수 있다. 다만, 「학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운영위원의 사전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내규를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에 5기생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와 제39조의2는 2009학년도 이후 전문대학원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선수학점), 제39조(선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200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 부과 받은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졸업평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졸업평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5조(선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 부과된 선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 국내외 타대학 취득성적의 본교 성적등급 환산 기준(학점취득 대학 성적증명서 기준)

<삭 제>

(별표 2) 학사과정 학과별 졸업평가 실시여부 및 유형(졸업평가는 2018.3.1.부터 적용)

학과	졸업평가 유형
행 정	미실시
정치외교	공인영어성적, 인턴활동보고서(공공기관 혹은 민간조직) 중 택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논문(서면형식 혹은 영상형식),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중 택 1
사 회	미실시
사회복지	(~2016학번까지)연구논문 (2017학번부터~)연구논문 혹은 졸업평가대체 과목 수강(사회복지현장실습1,2 중 택 1) 중 택 1
심 리	미실시
소비자	미실시
아동·청소년	미실시

※ 글로벌리더학부 졸업평가는 글로벌리더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별도로 정함.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상기 졸업평가를 2017. 9. 1.부터 적용함.

※ 아동 · 청소년학과는 상기 졸업평가를 2018. 9. 1.부터 적용함.

(별표 2의1) 정치외교학과 졸업평가 공인 어학성적

공인어학성적	인턴활동 보고서
<p><시험별 기준 성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IC 800점 이상 ◦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 TOEFL CBT 230점 이상, IBT 88점 이상 ◦ TEPS 386점 이상 ◦ OPIc IM 3 (Intermediate Mid 3) 이상 ◦ IELTS Academic Module 7.0 이상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예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성적만 유효합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영어점수는 해당시험 주관사에 공인여부를 확인하여 공인점수인 것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p><인턴활동 인정기관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 5인 이상 근무 민간조직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인턴활동확인서를 보고서에 첨부해야함. ◦ 학과 자체에서 마련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졸업 예정 직전 학기까지 제출해야함.

(별표 2의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평가 공인 어학성적 및 자격증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p><시험별 기준 성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IC 800점 이상 ◦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 TOEFL CBT 230점 이상, IBT 88점 이상 ◦ TEPS 386점 이상 ◦ OPIc IM 3 (Intermediate Mid 3) 이상 ◦ IELTS Academic Module 7.0 이상 ◦ TOPIK 6급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예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성적만 유효합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영어점수는 해당시험 주관사에 공인여부를 확인하여 공인점수인 것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p><자격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 KBS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별표 3)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과 및 전공(분야)

계열	학 과	전 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	정치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 한국정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언론매체, 광고홍보, 멀티미디어
	사회	사회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심리	인지심리, 사회심리, 산업및조직심리, 심리검사및측정, 임상심리, 건강심리
	소비자학	-
	아동·청소년	아동심리및교육(심리및발달), 아동심리및교육(영유아교육및보육), 아동심리및교육(아동문학및미디어교육), 아동심리및교육(상담 및임상), 아동심리및교육(영재 및 창의성교육), 아동심리및교육
	인재개발	인재개발(창의역량, 학습역량, 문제해결역량)
국정전문대학원	행정	-

(별표 4) 일반대학원 학과별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과목 리스트

학과명	학위	과목명 (교시별로 1과목 선택)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정치외교	석사	정치이론·사상	비교정치론	국제정치론	-
	박사	정치이론·사상	비교정치론	국제정치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양적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질적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평판커뮤니케이션1, 평판커뮤니케이션2, 브랜드마케팅커뮤니케이션1, 브랜드마케팅커뮤니케이션2,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통계분석론, 쟁점및위기관리PR, 공공건강커뮤니케이션, 미디어효과론, 설득커뮤니케이션의이론, 문화콘텐츠마케팅의이론과적용, 미디어와사회, 뉴미디어와사회자본, Advanced Seminar on News, Journalism and Culture, 문화간커뮤니케이션, 미디어생태학, 텔레커뮤니케이션론, 파이낸셜커뮤니케이션, 영상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택 1)	
	박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양적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질적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평판커뮤니케이션1,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통계분석론, 쟁점및위기관리PR, 미디어효과론, 미디어와사회, 문화간커뮤니케이션, Advanced Seminar on News, Journalism and Culture, 영상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택 1)	평판커뮤니케이션2, 브랜드마케팅커뮤니케이션2, 미디어생태학, 텔레커뮤니케이션론, 공공건강커뮤니케이션, 파이낸셜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와사회자본, 설득커뮤니케이션의이론, 문화콘텐츠마케팅의이론과적용(택 1)
사회	석사	사회학이론1.2	사회조사방법론	-	
	박사	사회학이론1.2	사회조사방법론	사회계층론연습, 경제사회학연습, 사회변동론연습, 조직사회학연습, 비교사회학연습, 발전사회학연습, 지식사회학연습, 문화사회학연습, 직업사회론, 정치사회학연습, 사회심리학연습, 도시사회학, 가족사회학연습, 범죄사회학, 동아시아사회론, 개별연구1, 산업사회학연습, 환경사회학연습, 노동사회학연습, 노년사회학연습(택 1)	
사회복지	석사	사회복지조사방법론연구	사회복지실천론연구, 사회복지정책론연구(택 1)	고급사회보장정책연구, 인간행동과사회환경연구(택 1)	-
	박사	사회복지조사방법론연구	사회복지조사방법론연구 (양적 또는 질적 문제 중 택 1)	사회복지실천론연구, 사회복지행정론연구, 사회복지정책론연구(택 1)	사회복지정책분석및평가연구, 고급인간행동과사회환경연구, 고급사회보장정책연구(택 1)
심리	석사	실험설계변량분석	사회심리학특강, 고급인지심리학	실험심리학이론, 사회심리이론, 산업및조직심리학특강, 문화반응이론과연습, 정신병리학	-
	박사	고급심리통계실험 설계법디변량	인지심리학, 실험사회심리학, 인지비인지적도제 작및타당화	일반회기능도이론, 기억이론, 문화반응이론, 인지심리학2, 인사선발, 상담및심리치료, 사회인지이론, 사회인지론, 작업동기론, 정신병리학	다차원척도법, 산업훈련, 구조방정식모형, 집단과정, 임상심리학특강, 조직행동특강, 인간정보처리론, 심리치료
인재개발	석사	고급통계	학습과이해	고급인지발달	-
	박사	회귀분석요인분석	작업동기론	긍정심리학	아동학대와방임

학과명	학위	과목명 (교시별로 1과목 선택)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소비자	석사	소비자양적연구방법 소비자질적연구방법 빅데이터플랫폼의이해 빅데이터처리의이해 고급빅데이터분석 기초중급통계학 요인분석공변량구조분석 다면량분석과통계학습 패널데이터분석 메타분석 소셜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예측모델링 Network Analysis for Communication Research	금융소비자특론 소비자유통특론 소비자정책특론 프로슈머와플랫폼경제 소비자의사결정특론 가계경제특론 글로벌소비자정책특론 소비자유형분석특론 소비트렌드연구	소비자니즈분석특론 가계재무관리특론 소비자역량개발특론 소비자시장분석 지능정보기술과소비자연구 구매채널특론 지속기능소비연구 소비자신용관리특론 빅데이터와소비시장분석 플랫폼경제와프로슈머연구 상품해부와소비자연구	-
	박사	소비자양적연구방법 소비자질적연구방법 빅데이터플랫폼의이해 빅데이터처리의이해 고급빅데이터분석 기초중급통계학 요인분석공변량구조분석 다면량분석과통계학습 패널데이터분석 메타분석 소셜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예측모델링 Network Analysis for Communication Research	금융소비자특론 소비자유통특론 소비자의사결정특론 가계경제특론 소비트렌드연구	소비자니즈분석특론 가계재무관리특론 소비자역량개발특론 구매채널특론 지속기능소비연구 빅데이터와소비시장분석 플랫폼경제와프로슈머연구	소비자정책특론 지능정보기술과소비자연구 소비자신용관리특론 글로벌소비자정책특론 소비자유형분석특론 플랫폼경제와프로슈머연구
아동·청소년	석사	고급통계	그림책의그림읽기 이동권리세미나 영재교육세미나 창의성발달세미나 고급사회정서발달 고급인지발달 고급유아교육이론 고급아동교육연구	아동미디어교육론 아동정신병리 창의성학과모델 고급발달심리 유아교육연구동향	-
	박사	다면량분석	아동미디어교육론, 아동권리세미나, 영재교육세미나, 사회·정서발달세미나, 고급유아교육이론,	그림책의독자연구 놀이치료세미나, 창의성발달세미나, 인지언어발달세미나, 고급유아교육과정연구,	아동미디어교육론, 아동상담세미나, 창의성의이론과모델, 현대아동심리세미나, 유아교육연구세미나,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석사	소비자양적연구방법 문화사회학연습 사회문제분석 빅데이터예측모델링 패널데이터분석 사회조사방법론 소셜빅데이터분석 자료처리와시각화 파이썬을활용한마신러닝	소비자의사결정특론 플랫폼경제와프로슈머연구 고전사회학이론 소비자유통특론 아동교육과사회변화 사회혁신이론및사례연구 가족다중격차와아동 아동청소년이주도하는사회 혁신세미나 미래기술,미래인간,미래정치	소비자유형분석특론 빅데이터와소비시장분석 미래사회위험과정치이론 민주주의론 지능정보기술과소비자연구 스마트디바이스와정신건강 윤리적이고신뢰할수있는인 공지능 지속기능소비연구	-
	박사	인공지능기초 소비자양적연구방법 빅데이터예측모델링 패널데이터분석 사회조사방법론 소셜빅데이터분석 자료처리와시각화 파이썬을활용한마신러닝	고전사회학이론 소비자의사결정특론 소비자유통특론 플랫폼경제와프로슈머연구 지능정보기술과소비자연구 가족다중격차와아동 윤리적이고신뢰할수있는인 공지능 미래기술,미래인간,미래정치	미래사회위험과정치이론 소비자유형분석특론 지속기능소비연구 아동교육과사회변화 스마트디바이스와정신건강 사회문제분석	민주주의론 빅데이터와소비시장분석 아동청소년이주도하는사회 혁신세미나 빅데이터활용사회경제격차 연구방법론 사회혁신이론및사례연구 융합프로젝트연구

(별표 5) 연구중심 학위이수 제도 시행 학과

구분	시행학과 소비자학과	심리학과
대상	박사과정 학생 중 수료학점의 50% 미만, 수업연한의 1/2 이수 미만인 자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학생 중 수료학점의 50% 미만, 수업연한의 1/2 이수 미만인 자
연구기관 소속	-	선정 직후부터 응용심리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수행 함을 원칙으로 함
연구학점 취득	12학점(MAX)	석사 : 12학점 박사 : 18학점 석박통합과정 : 24학점
교육과정 편성 (개설 교과목)	소비자학심층개별연구 III(3학점), IV(6학점), V(9학점)	심리학심층개별연구 III(3학점), IV(6학점) ※ 연구학점을 제외한 졸업 이수 학점 중 9학점은 필수적으로 방법론 2과목(고급심리통계 및 회귀분석요인분석)과 전공 1과목으로 필수 이수해야 한다.
영어/공개 PT	연구학점을 이수하는 때 학기마다 공개 영어 presentation 실시. 합격자에 한해 과정이수 지속을 허용하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교과중심 학위이수로 환원(기 취득 연구학점은 인정하되, 신규 연구학점 취득은 불가)	연구의 중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공개 /영어 Presentation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 여부를 결정
학술지 논문 제작	①심층개별연구 IV(6학점)을 수강하는 학생은 국내 등재지(KCI)에 주저자 자격으로 게재 필수 ②심층개별연구 V(9학점)을 수강하는 학생은 국내 등재지(KCI) 게재 필수 및 SSCI 급 논문에 주저자 자격으로 투고 필수 ③심층개별연구 III(3학점)을 신청하는 학생은 동일 과목을 반드시 2회 이상 수강해야 하며 누적학점이 6학점, 또는 9학점일 경우, 각각 ① 또는 ②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KCI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 자격으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부여
중도포기	내규 제33조의4 준용	내규 제33조의4 준용
학위수여	내규 제33조의5 준용	내규 제33조의5 준용

(별표 6) 특수대학원 학과 및 전공

대학원	학과	전공
국가전략대학원	국가전략학과	외교안보학, 국가경영, 국가정보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저널리즘, 문화콘텐츠, 광고홍보
	문화융합학과	문화예술경영, 엔터테인먼트경영, 도시공간문화, 유네스코국제문화정책, 휴비즈니스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보육경영학과	보육경영

(별표 7)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 (2019.09.01.부 시행. 단,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소비자학과는 2020.03.01.부터 시행,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은 2021.02.22.부터 시행)

대학원	학 과	면제요건 (택1)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학술지(전공분야 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논문 1편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적용 수료학점 이외 전공 6학점 추가 이수
	사회학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또는 SSCI 및 SCOPUS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논문 1편 이상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적용 수료학점 이외 전공 6학점 추가 이수
	사회복지학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지도교수(2인) 공동 학술지 저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지 이상이어야 함 - 학생이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 석사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적용 수료학점 이외 전공 6학점 추가 이수
	심리학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지도교수가 저자로 포함된 제1저자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지도교수 포함 2인 저자 중 1인인 공동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 또는 DOI를 제출하여야함 -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적용 - 학석사연계과정생도 적용되나 대학원과정 입학 이후 게재 논문만 인정 - 연구중심학위이수 중인 석사과정생의 경우 연구학점취득을 인정받기 위해 게재하는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제출 대체 학술지 논문은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p>※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상: KCI, SCOPUS, SCIE, SCI, SSCI, A&HCI 국제 전문학술지: SCI, SSCI, A&HCI</p>
	아동·청소년학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KCI등재지 또는 SSCI학술지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KCI 등재후보지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적용 수료학점 이외 전공 6학점 추가 이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 학위논문 통과 학위과정 체류기간 내 KCI, SSCI, SCOPUS 등재지에 제1저자로 논 문 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졸업자격시험 면제 - 게재확정증명서 또는 공문을 제출하여야함 대학원 전공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 6학점 추가 이수 <p>※ 상기 기준은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적용</p>
	소비자학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적용 - 연구중심학위이수 중인 석사과정생의 경우 연구학점취득을 인 정받기 위해 게재하는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제출 대체학술 지 논문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수료학점 이외 전공 6학점 추가 이수

소셜이노베이션 융합전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CI 등재지, 국제전문학술지에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 (게재확정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2. 현장 전문가 진로를 희망하는 전일제 학생이 학과의 사전 허가를 받은 기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서 300시간 이상(15주×5일×4시간) 업무 경력을 쌓고, 이에 대한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과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서의 발표 또는 관련 외부 학회발표 증빙 제출을 충족하는 경우 3. 본 교육연구단의 학사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데이터사이언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소셜이노베이션 관련 대회 및 현상공모에서 입상한 경우 4. 수료학점 외 전공 6학점 추가 이수[2021년 전기 이후 입학한 신입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5. 학사관리 운영위원회에서 1~3의 경우에 대한 졸업요건을 심의·결정함
-----------------	--

※ 석사학위논문제출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도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응시/합격 필수

※ 구 소비자가족학과 가족학 전공 석사과정생은 위에 기술된 사회복지학과의 면제요건을 동일하게 소급적용